



MINI Market Report

국가	일본
제품	영양제

※ 조사 코멘트 ※

가공식품 수입신고시, 원재료명과 코드만 기재하면되며, %까지는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7~8페이지의 일본 식품수입신고서 작성 파트 확인요망). 단, 라벨링 표기의 경우, 식품첨가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용기준에 따라 비율을 표기해야 하지만, 원재료에 대해서는 어떤 원재료를 사용해서 제조하는지만 기재하면 됩니다. 원재료는 제조사가 작성하며, 발행한 회사명, 사용한 원재료 및 식품첨가물의 구체적인 화학명칭을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주관사 : aT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 일본 검역 정보

□ 일본 후생노동성 검역소의 심사 및 검사

- 신고를 접수한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식품 등인지 여부를 식품위생감시원이 심사함
 - 식품위생감시원은 아래 내용에 대해 심사함. 심사는 식품 등 수입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출국, 수입 품목, 제조자 및 제조소, 원재료, 제조 방법, 첨가물의 사용 여부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짐
 - 식품위생법에 규정된 제조 기준에 적합한가
 - 첨가물의 사용 기준은 적절한가
 - 유독 유해 물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
 - 과거 위생상의 문제가 있었던 제조사 또는 제조소인가
(JETRO 홈페이지의 식품 및 첨가물 등의 규격 기준 정보→
<http://www.jetro.go.jp/jpn/regulations/guidebook/index.html>)
- 심사 결과, 검사를 실시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예 : 과거 식품위생법 위반이 많았던 화물, 수입 복어 등)은 검사 명령(검사명령제도), 행정 검사(기타 검사제도) 등의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품위생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확인함
- 심사 및 검사 결과 적법(=합격)하다고 판단되면 신고한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이후 통관을 진행함
- 위반(=불합격) 판단된 식품은 일본 내로 수입될 수 없음. 위반 내용은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수입업자에게 통지되며, 이후의 취급은 후생노동성 검역소의 지시에 따름
- 수입 신고의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를 목적으로 한 제도가 도입됨
 - 수입 절차 간소화 및 신속화 제도
 - 사전신고제도
모든 식품 등에 대해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신고서를 접수받고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것 등을 제외하고 화물 도착 전 또는 반입 후 신속하게 신고필증이 교부됨

· 계획수입제도

특정 식품 등을 반복해서 수입하는 경우 처음 수입 시 수입 계획을 제출,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다음부터 수입할 때마다 신고를 생략할 수 있음

· 외국 공적 검사기관의 검사 결과 승낙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에서 미리 검사를 받아 그 성적서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물 검역소에서 해당 검사가 생략됨. 단, 수송 도중 변화할 우려가 있는 항목(세균, 곰팡이 등)은 제외함

· 동일 식품 등의 지속적인 수입

특정 식품 등을 반복해서 수입하는 경우 처음 수입 시 신고서에 검사 성적서를 첨부하여 심사 결과 문제가 없으면 일정 기간 동안은 해당 항목에 대해 다음부터 수입할 때마다 검사를 생략할 수 있음

· 수입 식품 등 사전 확인 제도

수입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에 적합한 것을 사전에 확인하고 해당 식품 등 및 그 제조 가공업자를 등록하는 것으로 등록된 식품 등에 대해서는 수입 시 검사가 일정기간 생략(검사명령에 관한 검사 및 모니터링 검사를 실시하는 식품 등은 제외)되며, 신고 후 신속하게 신고필증이 교부됨

－ 식품위생법에 관한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취급

- 외국으로부터 일본 국내에서 판매 또는 영업 상 사용하는 식품 등을 우편화물로 수입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수입 신고가 필요함
「식품 등」에는 식품, 첨가물, 기구, 용기 포장 및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장난감이 포함되며, 수입하는 형태나 양에 따라 취급이 바뀌는 것은 아님
- 우편화물이 일본에 도착하면 세관 관서에서 「외국에서 도착한 우편물의 세관 수속 안내(이른바 도착 통지서)」가 발송되고 세관 수속을 실시하게 되며, 이때 국내에서 판매 및 영업에 사용하는 목적이라면 상기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우편화물이 보관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수입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음
- 개인화물 등 상기 목적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 신고가 불필요함
- 이 수입 신고는 통관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할 필요가 있음. 만일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우편화물을 수입한 경우, 국내에서 판매 및 영업에 사용할 수 없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함

- 기타 수입 절차에 사용하는 각종 양식

- 품목 등록 신청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2조(수입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 화물 도착 예정일 7일 전날 이후에 검역소에 제출해야 함) 제1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첨가물, 원재료 및 제조 또는 가공 방법, 용기 포장의 재질 등)을 등록할 때 사용
- 품목 등록 변경 요청서
등록된 내용을 변경할 때 사용
- 확인 출원
수입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식품에 대해 세관에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사용
- 위생 관리 설명서
화물 반입 전에 식품 등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사용
- 입출력 장치 설치 및 폐지 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3조(컴퓨터를 이용한 수입 신고 시 미리 후생노동성에 기기를 등록해야 함)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설치 및 폐지 신청 시 사용
- 입출력 장치 신고에 관한 변경 신고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 신청 시 사용

□ 검사제도로는 명령제도, 모니터링 검사제도, 기타 검사제도 등이 있음

- 검사 명령제도

- 수출국의 사정, 식품의 특성, 동종 식품의 위반 사례로 보아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식품 등에 대하여 후생노동대신의 명령에 의해 수입자 스스로 비용을 부담하여 검사를 실시, 적법 판단을 받을 때까지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검사제도

- 모니터링 검사제도

- 식품위생법 위반 가능성이 낮은 식품 등에 대해 품목별 연간 수입량과 과거 위반 실적을 감안하여 연간 계획에 따라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실시되는 검사 제도
- 모니터링 검사는 다양한 수입 식품의 위생 상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원활한 수입 및 유통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험 검체의 채취는 이루어지지만, 시험 결과의 판정을 기다리지 않고 수입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기타 검사제도

- 모니터링 이외의 행정 검사로는 초회 수입 식품 등의 검사,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식품 등의 확인 검사, 수송 도중에 사고가 발생한 식품 등의 확인 검사 등이 후생노동성 검역소의 식품위생감시원에 의해 실시됨 (현장검사)
- 또한 초회 수입 시 및 정기 수입 시, 수입자에게 식품 위생 안전 확보 의무의 책임이 있다는 관점에서, 필요한 항목에 대해 확인 시험을 실시하도록 후생노동성 검역소에서 지도할 수 있음 (지도검사)

□ 수입 신고 방법

- 수입 신고를 실시하기 위한 수입 신고서 준비(원본 및 사본).

- 수입 신고서의 기재 항목을 모두 기입

- 필요에 따라 자주 검사 성적서를 함께 준비
- 특히 다음 식품은 정해진 첨부 문서가 필요

- 육류, 육류 조제품 : 수출국 정부에서 발행한 위생 증명서
- 복어 : 수출국의 공공기관이 작성한 위생 증명서(복어의 종류(학명), 어획 해역, 위생적으로 처리되었음을 알리는 문구를 기재)
- 가공식품 등 : 제조자가 작성하여 발행한, 회사명이 들어간 성분표(원재료, 첨가물 등이 기재된 것), 제조공정표 등(살균 온도, 시간 등이 기재된 것)

- 수입 신고서 및 필요 서류 등이 준비되면 수입한 항구를 관할하는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수입 신고를 함

- 현재 후생노동성의 식품 등 수입 신고에 대해서는 서면 수입 신고 외에 컴퓨터를 이용한 수입 신고도 가능하나,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후생노동성에 기기를 등록해야 함

- 신고에 필요한 서류

- 식품 등 수입 신고서(원본과 사본, 2부)

< 식품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첨부 자료의 예 >

대상 품목	첨부 서류
가축(소, 말, 돼지, 면양, 산양, 물소) 및 가금(닭, 오리, 칠면조) 고기와 장기 및 이를 원재료로 한 식육 제품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 증명서
복어	수출국 공적 기관의 어종 및 채취해역 등에 관한 위생 증명서
시안화합물 함유 잡두	서약서
타르 색소	제품 검사 신청서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의 검사를 받은 것	"수출국 공적 검사기관 리스트" 수록 기관의 검사 성적서
가공식품 등으로서 처음으로 수입되는 것	제조사명이 기재된 상품 설명, 또는 수입자가 확인 후 작성한 서류
동일 식품 등의 계속 수입	1년 이내에 실시한 등록검사기관의 자주검사 성적서 또는 행정검사에 합격했을 시의 수입신고서의 사본
생식용 굴	수출국 정부기관의 위생 증명서 뉴질랜드, 호주, 미국, 한국, 캐나다, 아일랜드
쇠고기 가공품 등(BSE 관계)	쇠고기 가공품 등의 소 원재료의 원산국에 관한 보고(젤라틴 포함)

■ 기타 자체 검사 결과 등

- 수입 신고의 시기는 식품 등에 관한 사고가 없는 한 도착 예정일 7일 전부터 신고할 수 있음
- 수입 신고는 원칙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가 해야 하지만, 통상적으로 수입자를 대신하여 통관업자에 의한 대리 신고가 이루어짐

< 통관업자에게 통관 수속 등을 의뢰했을 때의 요금 >

통관업무의 종류	단위	요금(JPY)
(1) 수출(반송) 신고	1건	5,900
소액화물 간이 통관 취급	"	4,200
(2) 수입 신고	신고 납세(예비 신고 포함)	11,800
소액화물 간이 통관 취급	"	8,600
부과 과세	"	10,500
소액화물 간이 통관 취급	"	7,800
보세장치장 출고, 종합보세구역 총출고(가공, 제조, 전시품 제외)	"	7,000
소액화물 간이 통관 취급	"	5,100
(3) 보세장치장 입고 신청	"	7,000
(4) 보세공장 이입 신청	"	7,000
(5) 보세전시장 장치장 등 승인 신청	"	7,000
(6) 종합보세구역 총입고 신청	"	7,000
(7) 수입허가 전 화물 인수 신청	"	5,100

(8) 외국화물선용품 적재 신고	"	5,100
(9) 외국화물 운송 신고	"	5,100
(10) 그 외의 신고 및 신청	"	1,300
(11) 제 신고 또는 허가승인서 사본 작성	"	200
(12) 할증료	"	요금의 50%

출처 : 일본 세관

□ 건강식품 수입관리제도

- 일본 건강식품의 수입은 「식품위생법」, 「건강증진법」 등의 규제를 받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식물방역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의 규제를 받기도 함
- 식품위생법에서는 건강식품도 일반식품과 동일한 취급을 받아 건강식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 통관하는 검역소의 수입식품관련 업무창구에 식품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수입신고서의 심사결과, 위생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검사가 이루어지며, 수입가능여부 심사가 이루어짐
- 건강식품에 사용되는 첨가물에는 각종 비타민류, 미네랄류, 아미노산 등이 있으며, 그 중 일본에서 사용이 인정되지 않은 것, 사용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으므로, 종류 및 사용비율에 대해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건강식품 중에서 의약품과 같은 효능효과를 나타내는 것 또는 형상 및 용법 용량이 의약품과 같은 것은 의약품으로 구분되어 수입품에 대한 약사법의 수입판매 허가의 약품으로 수속이 필요함
- 일정 요건을 만족한 건강식품은 「보건기능식품」으로 표시할 수 있음(건강증진법). 단, 식품위생법이나 JAS법에 규정된 품질표시기준이나 알레르기 물질 표시, 유전자조합원료 등의 판매 표시 의무와는 다르게, 보건기능식품 표시 제도는 임의표시로, 수입자가 국내 판매 시에 표시를 희망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된 규격 기준에 적합할 것, 또는 국가의 심사 수속이 필요함

□ 일본 식품수입신고서 작성

- 식품위생법 제 16조에 따라 필수사항을 기입한 식품수입신고서를 검역소에 제출해야함
- 화물이 가공식품인 경우에는 원재료명과 원재료코드를 기입하면 됨

- 가공식품의 원재료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제조자가 작성한 원재료리스트를 제출해야함. 칼로리, 단백질, 지방질 등에 대한 영양성분리스트는 제출할 필요가 없음
- 수출입항만 정보처리센터의 수입식품감시 지원업무 웹페이지에서 수입신고서 관련 코드(code)를 확인할 수 있음

■ 수입식품감시 지원업무 관련 코드

<http://www.naccscenter.com/system/code/fains-code.html>

< 수입 식품 감시 지원 관련 코드 메인 페이지 >

코드 명칭		데이터	최신데이터 게재일
공통부			
1	신고 유형 코드		
2	생산국 제조국 코드	Excel 형식	2014년 8월 1일
3	공급자(A) 코드 (육류 및 육류 제품이 아닌 공급자)		2014년 12월 15일
4	공급자(B) 코드 (육류 및 육류 제품의 공급자)		2014년 12월 15일
5	공급자 (B) 코드 (BSE 대일 수출 인증 시설 공급자 등 코드 대조표, AU, US, CA, FR, NL, IE, PL)	Excel 형식	2014년 11월 17일
6	수출자 코드	Excel 형식	2014년 12월 15일
7	포장자 코드	Excel 형식	2014년 12월 15일
8	적재항 ·선적항 코드	유엔 LOCODE (국가코드 포함) 를 사용	
9	보관장소 코드		
10	사고유무 코드		
11	검사 명령 해당 공급자 등 코드 대조표		2014년 12월 15일
12	모니터링 계획 별표 제 3의 대상공급자 등 코드 대 조표		2014년 12월 15일
보세 지역 코드 를 사용			
1	품목 코드		2014년 12 04 일

2	용도 코드		
3	포장 종류 코드	Excel 형식	
4	계속 수입 표시 코드		
5	적재 수량 단위 코드		
6	원재료 코드	Excel 형식	
7	재질 코드	Excel 형식	2014년 11월 10일
8	첨가물 코드	Excel 형식	2014년 11월 25일
검사 결과 통지서 별표			
1	축수산 식품	Excel 형식	
2	농식품	Excel 형식	

□ 건강식품 수입 검사기관

－ 후생노동성 검역소

- 소관 : 후생노동성 건강국 결핵감염과
의약식품국 식품안전부 기획정보과
- 전국 주요 항만, 공항 및 출장소 등 총 13개소가 설치되어, 검역법, 감염증법, 식품위생법 등에 따라 여행자와 수출입 식품에 대한 검역 업무를 실시
- 일본 내에 상시 존재하지 않는 전염병의 병원체가 선박 또는 항공기를 매개체로 국내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에 대해 기타의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
- 연락처
 - TEL: 03-5253-1111(代)
 - 홈페이지: <http://www.mhlw.go.jp>

* 참고자료

- 주한일본기관 : www.jetro.go.jp/korea/co/jp
- 관세청 : www.customs.go.kr
- GTA : www.tradestatistics.com/gta
- 일본 후생노동성 : www.mhlw.go.jp
- 일본 소비자청 : www.caa.go.jp
- 일본 세관 : www.customs.go.jp